

행 정 안 전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6. 1. .

행 정 안 전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9항 후단 중 “16명을”을 “17명을”로 한다.

별표 1의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702”를 “1,7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72”를 “1,6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702”를 “1,7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72”를 “1,6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 및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 및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

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2”를 “13”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5”를 “16”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3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4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458”을 “459”로 하고, 일반직 계 “449”를 “4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8”을 “409”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27”을 “337”로 하고, 일반직 계 “327”을 “3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3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100”을 “101”로 하고, 일반직 계 “100”을 “1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9”를 “10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16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 ----- ----- ----- ----- -----. ----- ----- ----- ----- ----- <u>17명</u> 을----- ----- ----- ----- ----- ----- ----- -----.
⑩ · ⑪ (생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02</u>	<u>1,703</u>	+1
·	·	·	
·	·	·	
일반직 계	<u>1,672</u>	<u>1,673</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u>2</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02</u>	<u>1,703</u>	+1
·	·	·	
·	·	·	
일반직 계	<u>1,672</u>	<u>1,673</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u>2</u>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7</u>	+2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7</u>	+2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u>사무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 <u>통신운영주사보</u> • •	• • <u>12</u> • • <u>1</u> • •	• • <u>13</u> • • <u><삭 제></u> • •	+1 -1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 <u>통신운영주사보</u> • •	• • <u>15</u> • • <u>1</u> • •	• • <u>16</u> • • <u><삭 제></u> • •	+1 -1

[별표 8의3]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 1	• •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신 설>	1	+1
• • 기계운영서기보 •	• • 1 •	• • <삭 제> •	-1

[별표 8의4]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 1	• •	
<u>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u> <u>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u> <u>전산서기보</u>	<u><신 설></u>	<u>1</u>	+1
• • <u>기계운영서기보</u> •	• • <u>1</u> •	• • <u><삭 제></u> •	-1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8</u>	<u>459</u>	+1
일반직 계	<u>449</u>	<u>45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8</u>	<u>409</u>	+1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7</u>	<u>337</u>	+10
일반직 계	<u>327</u>	<u>337</u>	+1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3</u>	<u>333</u>	+10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u>	<u>101</u>	+1
일반직 계	<u>100</u>	<u>10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9</u>	<u>100</u>	+1